

防災業務의 實態 및 展望



金炳暉
<點檢 1部・次長>

目 次

1. 序論
2. 火協 火災豫防業務의 成果
3. 安全點檢의 現況
4. 火災豫防業務의 展望 및 對策
5. 結論

1. 序論

불은 人間만이 利用할 줄 알고 有史以來 계속하여 人類發展에 莫大한 貢獻을 해왔다. 그러나 때로는 불로 因한 損失을 甘受할 수 밖에 없었고 불로 因한 損失은 社會에 가공할만한 犯牲을 強要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生命과 財產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一翼의 業務를 火協이 委任을 받아 國家防災機關과의 긴밀한紐帶로

火災豫防業務에 전력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本檢討는 火協創立 五週年을 맞아하여 現業務로 客觀的으로 고찰하여 向後火災豫防業務의 方向을 예측 내지는 을바르게 誘導함을 目的으로 設定하였다.

2. 火協 火災豫防業務의 成果

火協創立 이래 지금까지 만 5년동안 火協은 火災에 對한 安全點檢, 防災에 對한 기준재정 및 연구, 계몽, 홍보업무등을 실시한 비교적 폭넓은 防災활동을 하여왔다.

그간 火協業務의 效果는 5년이라는 짧은기간의 기초적인 統計數值等의 未洽으로 주로 外觀的인 效果만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國家消防對策에 미친成果

우선 豫防活動의 土臺가 되는 기술측면의 向上에 寄與한 점을 들수 있다. 즉 豫防對策의 根源이 되는 關係法의 技術的인 복잡성을 높은 學

究的인 바탕과 偵擊한 자세로 해석하여 예방활동의 要求에 副應하였으며, 關係法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最新科學器機들을 導入 活用함으로써豫防點檢의 科學化를 도모하였다며, 둘째 建物主나 防火管理者의 定期 또는 隨時教育을 通해防火意識을 일깨워 줌과 同時に 防火規定을 설叮, 認識시킴으로써 建物主및 建物關係者 스스로가 그 必要性을 깨닫게 하였고, 특히 火協의 极力적인 防火安全弘報活動 및 安全點檢實施로 國民防災意識構造의 急速한 개선에 있어 매우 크게 貢獻하였다 하겠다. 셋째 關係法의 效果의 活用으로 安全點檢의 結果를 關係機關에 通報하여 未備된 施設을 보완도록 촉구하고 또 이를 차입점검을 通하여 시정여부를 재통보하는 체제로 갖추어豫防活動에一般的인 通念을 刷新하였고 넷째 年間點檢結果를 分析檢討하여 그結果를 關係機關에 建議, 防火政策樹立에 참고자료로 提示하였으며, 未備되었거나 補完되어야 할 關係規定의 改正을 要請하여豫防活動의 根源을 다쳤으며, 다섯째 對象物件의 消火設備, 建物設備, 化工機械設備, 電氣設備等의 改善은 火協의 极力적인 安全點檢活動의 대단한 成果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나. 保險業務改善에 미친 成果

火協點檢은 保險業務의 개선에도 상당히 기여하였다 하겠다. 火災保險은 數理的인 바탕, 復雜하고 깊은 技術的인 資料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點에 있어 點檢이 하는 技術調查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수 없어 當協會는 이 部分을 完全하게 消化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첫째로 火災保險의 適正料率과 正確한 保險價額 算定을 위한 諸 資料의 作成이다. 保險料率은 建物構造, 用途, 生產工場의 工程, 生產能力, 危險品의 收容 및 使用與否, 消火設備等에 의해 그 基本料率, 割引, 割增料率이 결정되므로 이들 諸 資料가 各分野의 專門技術者들의 細密한 調查와 檢討를 거쳐 報告書를 作成한다. 또 保

險價額 推定을 위한 建物構造, 마감재파악, 面積測定 및 機械設備明細書를 調査하여 報告書로 作成하고 罷災時 補償의合理化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保存함으로써 協定料率에 의한 正確하고 適定한 料率算定은 물론 罷災補償의 科學化로 도모하였다. 둘째로 點檢結果에 의한 改修必要事項을 改善時 이를 保險料率과 관련시킴으로 保險을 通한 施設改善을 誘導한 점을 들수 있다. 防火區劃, 消火設備等의 改善은 곧 料率에反映되므로 建物主로 하여금 改善時 이를 料率上 가장 유리한 方向으로 擠장함으로서 效果的인 改善誘導가 되고 이를 保險側面에서 살펴보면 罷災額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다. 國家人力開發에 미친 成果

火協은 또한 國家의 防災技術人力開發에 貢獻하였다 할수 있다. 經濟發展에 따라 國內產業構造도 多樣해지고 그 規模도 커져서 이에 따른 罷災規模 및 件數도 增加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建設에만 急急한 나머지 이를 保護하는 對策이 未洽하여 70年代 初에 大型火災를 잊달아 겪었으며 이에 따라豫防活動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專門的인 防災技術人力을 확보하기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火協의 設立으로 自體教育을 通한 綜合防災技術人을 양성시켜 國家防災業務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3. 安全點檢의 現況

以上과 같이 火協 5년간의 保險業務成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火協의 防災業務는 아무런 문제점 없이 進行된것만은 아니다. 즉 安全點檢 結果를 官權에 依한 改修誘導, 點檢目標를 質的인 것보다는 量的으로 치리하고자 하는 경향, 合理的인 點檢基準보다는 關係法規에 의존하는 점검실시 등 內面의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다. 구체적인

點檢業務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安全點檢結果의 處理

安全點檢結果는 特別法에 의하여 消防官署로 通報되며 各 消防官署에서는 國務總理訓令 第 122號에 따라 特殊建物所有者에게 行政命令을 發付하고 있다.

關係法規에 依한 點檢은 行政官署가 擔當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火協의 安全點檢은 獨自의 으로 科學技術의 土臺에서 專門化하여 關係法規의 合理性 또는 矛盾性을 發見하여 頂차 國家防災를 그 社會의 與件에 맞고 未來를 豫測할 수 있는 次元에서 遂行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次後 行政機關의 機能이 強化되어 火協의 協助를 求하지 않더라도 關係法規에 依한 自體點檢이 可能한 時期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그때를 對處하지 못한다면 火協의 安全點檢業務는 하루 아침에 不必要한 業務로 전락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現在와 같이 行政關署의 業務代行에서 脫皮하여 能動的으로 對處할 必要가 있겠다.

나. 點檢人力

그간의 火協은 約250명의 技術人力을 防火役軍으로 양성해왔다. 그러나 國內技術業界가 活氣를 되찾음에 따라 76년도 末부터 火協의 技術人力에 離職現象이 뚜렷이 나타났고 지난 77년도 1年間 50人이 火協을 떠나 他技術業種에서 종사하고 있다. 外的으로 보면 技術景氣의 浮揚으로 因한 不可抗力의 現象으로 돌릴수도 있겠지만 技術業務의 成敗가 技術의 科學化專門化 및 熟練化에 左右된다고 생각할때 이는 火協에 큰 損失인 것이다. 有能한 經歷技術職 1人の 離職은 新入技術職 數名과도 바꿀수 없는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技術業務는 專門技術分野에 投身하게 되면 擔當分野의 理論을 자기나름대로 定立하게 된다.

理論의 定立과정에서 大學에서 專攻한 基礎工學이 土臺가 되며 이를 現業에서 계속하여 證明하여 完成된 知識 및 經驗을 蕁積하게 된다. 技術實務 理論은 技能의 아니고 創造의 것이다. 火協의 技術業務인 火災豫防業務는 이러한 創造的 科學技術의 土臺에서 發展시켜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火協의 技術業務는 先進外國의 防災技術業務의 水準에 達하지 못하고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技術業務는 이와같이 다분히 業務自體가 創造性 및 自發性이 있기 때문에 工學의 管理與件만 갖추게 된다면 急速한 發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點檢方法

78年度 技術部署運營計劃에는 差等點檢을 實施토록 되어있다. 이方法을 쉽게 풀이한다면 火災가 나더라도 큰 損失이豫想되지 않는 建物로서 小規模인 것에 대하여는 적은 人力을 投入하고 大規模重要建物에 대하여는 人力과 時間을 充分히 投入하여 點檢에 効率化를 期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現在도 이와같이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當初 모든 建物을 建築, 化工, 電氣 및 機械의 4個 分野 4人이 點檢에 임하던것을 明文化하자는 데 그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와서 보면 과거에 各其 專攻 分野에 따라 點檢을 實施한다는 데에는 試行錯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火災豫防業務를 綜合 防災의 側面에서 다루지 않고 細分化하여 精密點檢을 하자는데 그뜻이 있었으나 時間이 지남에 따라 專門化보다는 短片의 点檢에 훌리 綜合評價機能이 不足하여 創造의 技術業務와는 거리가 먼 技能點檢에 머물게 되어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結果가 되었다. 現在도 이와같은 現象은 如前하여 差等點檢이 本格的으로 實施되더라도 專門技術이 必要한 大型建物에서는 差等點檢의 餘地를 남기고 있지 못하므로 點檢이 機能化 現象의 脱皮는 어렵다 하겠다.

라. 點檢基準

火協이 實施하고 있는 安全點檢에는 明文化된 技術基準이 없는 상태이다. 火協設立當時의 생자으로는 技術職員만 確保하면 自動的으로 解決되는 줄 알았고 이러한 着案에서 技術職이 採用되었으나 實務에 임하여 어떠한 基準으로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火災豫防業務가 公益事業이고 國家防災政策에 步調를 맞추어야 함은 當然한 것 이므로 關係法을 安全點檢基準으로 함이 當然하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合理性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關係法은 消防法規나 建築法規를 가장 많이 採用하는 바 이들 法規의 內容이 大部分 日本等 外國法規의 外形만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適用함에 있어 技術的인 事項이 결여된 기계적인 적용에 그치게 되었다. 또한 安全點檢이 技術的인 바탕위에서 成長할 것이 아니고 行政的인 바탕위에서 成長한 結果로 技術的으로 해결하여야 할 問題도 거의가 行政的으로 處理되고 있다.

火協의 安全點檢이 이처럼 科學技術的인 바탕이 빈약하기 때문에 實務에 종사하는 技術人力도 業務를 處理함에 있어 能動性을 잃고 關係法規만 알면 火災豫防이 可能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安全點檢 政策에도 適用되고 있어 火協 全體의 技術業務가 活氣도 잃고 外形的인 實積에만 치우치고 있다. 火協의 防火業務의 經歷이 日淺하여 별색부터 先進外國의 類似業務機關의 水準에 達한다는 것은 無理일것이고 조급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火協의 火災豫防業務가 멀지 않아 그들의 水準에 達할 수 있도록 現在合理的인 方向이 決定되어 그 方向으로 事業이 推進되어야 함은 반드시 必要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合理的인 安全點檢基準의 制定 및 補完作業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고 하루빨리 火協 自體의 安全點檢基準을 火協技術陣의 自力으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므로서 合理的인 기준을 向한 研究 및 實驗이 火協技術陣의 業務意慾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火災豫防業務의 展望과 對策

以上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火協의 安全點檢業務는 改善되어야 할 點이 많이 있다. 그러나 火協의 火災豫防事業은 그事業취지가 國民生活의 安全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며 事業의 본뜻을 充分히 실린다면 永久不滅의 業績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特히 火協의 火災豫防事業은 保險 및 行政機關과의 紐帶를 가지고 있으므로 基本的인 事業展望은 밝다고 할 수 있다. 產業發達에 따라 特殊專門分野가 要求되는 바 火協의 業務는 工學的인 要素를 保險의 “언더라이팅” 業務와 連結시키는 特殊專門分野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밝은 未來를 約束하기 위하여 現行 火協의 業務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對策이 要求된다.

가. 安全點檢業務의 方法 改善

1) 安全點檢은 點檢對象物의 全體의 火災에 對한 危險度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技術職員의 專攻別 點檢을 지양하고 單獨點檢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現行 法規에 依한 點檢을 지양하고 火協의 安全點檢基準을 制定 및 補完하여 이를 근거로 點檢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에 따라 消防官署에 點檢結果를 通報함에 있어 火災危險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建物에 對하여만 示範의으로 強力한 行政措置를 依賴하여 安全點檢의 權威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火災危險度를 직접 보험료를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 安全點檢技術의 開發

1) 安全點檢基準의 制定을 위하여 國內外 資料를 수집하고 基準制定을 擔當하는 實務者로

海外研修 시키며, 基準制定 事業을 火協의 于先 事業으로 人力 및 豊算을 充分히 配定시켜야 할 것이다.

2) 試驗 實習 機器를 갖춘 防火專門研究所를 設置하여 無限의 技術資源을 發掘하고 安全點檢 業務에 土臺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業務體制의 整備

現在 實施하고 있는 確認點檢은 行政命令의 履行與否를 確認하기 為한 것으로 이리한 業務는 行政機關에서 擔當함이 타당하다.

行政機關이 아닌 火協이 行政命令의 履行與否를 확인한다는 것은 아무리 委任을 받은 業務라 하여도 官權의 行事이며 火協 本然의 業務라 할 수 없다. 確認點檢에 投入되는 豊算을 좀더 効果의 次과 같은 防火業務에 投入시킴이 옳다고 생각된다.

- 1) 專門防火研究所의 設置
- 2) 防火設備部品에 對한 檢定資料提供
- 3) 防火管理者의 教育 및 資格證 賦與
- 4) 防火設備의 保險料 割引, 割增에 關한 資料提供
- 5) 建物 新築時에 防火設備 認許에 關한 檢查資料 提供
- 6) 各種 防火安全基準의 制定

5. 結論

火協의 火災豫防業務를 實施한지 5년으로 아직은 數十年의 業務經驗이 있는 先進外國의 水準을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政府의 防災政策에 鉅極적으로 呼應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火災豫防業務가 營利的인 業務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業績에 對한 評價도 無形의으로 長期的인 計劃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火災豫防이라는 單一業務로서 火協만한 民間機構의 巨規模를 가진 團體는 없고 이리한 業務에 莫大한 豊算을 投入하면서 火災豫防業務를 수행할 수 있는 企業도 아직은 없는 實情이다. 火災豫防이라는 事業은 國家의 次元으로 볼 때 반드시 必要한 것이며 이를 所期의 目標에 올려 놓기 위하여는 火協의 火災豫防業務하나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여기에는 社會의 要素 經濟의 要素 및 政治의 要素가 調和를 이룰 때 可能하게 될 수 있는 복雜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火協은 技術的인 面에서, 國民은 防火認識이 높아지, 火災로 因한 損失이 國家財產의 損失이라는 차각을 하고 火災로 因한 人命과 財產의 損失을 長期的인 政策의 뒷바침으로豫防할 수 있도록 關係法을合理的으로 運用하는 等의 各其 分擔된 일을 充實히 이행해 나갈 때 火協의 防火業務는 勿論 國家 防火業務에 보람찬 도약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을 새 마을
불조심은 내가 먼저